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 95년도 사업계획승인 및 새로운 임원 선출

지난 11월 25일 방사성동위원소협회는 제34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9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였다.

95년도 사업계획의 특징은 정부의 위탁사업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비 4천만원을 책정하였고 동위원소회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인쇄비를 증액하였다. 특히 정부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협회도 국제협력사업에 치중할 계획이며 금년도 예산은 94년보다 7.4% 증액된 6억6백만원을 책정하였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금년 12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및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공석이 되는 감사 1명이 선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적이사 19명중 임기가 만료되는 16명에 1명을 추가하여 17명이 선출되었는데 현 이사중 14명이 유임되고 3명은 새

로운 이사가 영입되었다.

현재 협회 감사인 서울대 의대 이명철 교수와 원자력병원 유성렬 연구부장, 한국전력공사 양창국 방사선안전실장이 이사로 영입되었다. 이명철 감사 후임으로는 카톨릭의대 정수교 교수가 선출되었다.

새로선출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처분제한치 미만 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 교육

지난 11월 28일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에 관한 교육을 협회 주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분원에서 실시하였다.

강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원재 박사가 담당하였다.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234조의 16 및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허용기준 및 처분제한치와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하여 규정을 목적으로 하였고,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리저장하여야 하며, 자체처분사업자는 자체처분에 대한 절차서를 마련하여 그 절차서에 따라 자체처분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체처분 신고는 자체처분사업자가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신고서를 작성

직 위	성 명	소 속
회 장	고창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교수
부회장	고병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
부회장	정명조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	황경호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상근부회장
이 사	강창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핵공학과 교수
이 사	김덕승	한국원자력연구소
이 사	김지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교수
이 사	김재록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로관리부장
이 사	김철종	새한산업(주) 대표이사
이 사	문석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
이 사	박병설	(주)이원양행 대표이사
이 사	양창국	한국전력공사 방사선안전실장
이 사	이근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기술원
이 사	이명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교수
이 사	유성렬	원자력병원 연구부장
이 사	전재식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이 사	채화목	한양종합검사(주) 대표이사
감 사	정수교	카톨릭의과 대학 핵의학과 교수

하여 6월 또는 12월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 시행전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한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고 1995년 12월말 신고분까지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신고필증을 받은 후 자체처분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하는 분은 협회 방사선기술부로 문의 바랍니다.)

'94년도 RI 통신교육수강자 수료시험 실시

협회는 1994년도(제8회) RI 취급자일반면허 통신교육과정 수강자에 대한 총정리 교육 및 수료시험을 지난 9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총정리교육은 지난 1월부터 9개월간 교육한 내용을 중심으로 과목별 담당지도교수의 요점정리,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고, 교육후에는 수강생이 9개월간 저마다 다져온 실력을 평가하는 수료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총 239명이 수료하였다.

위탁업무 안내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는 과학기술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업무
(과학기술처 공고 제1994-12, '94. 2. 17)

1. 업무내용

가. 피폭방사선량 분기보고 기록유지 및 경력확인

(1) 피폭방사선량 분기보고 기록유지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분기보고 기록 유지관리

(2) 경력확인
방사선피폭경력등이 필요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방사선이용기관) 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기록확인 신청시 협회는 방사선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를 발급

나. 건강진단 기록관리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의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협회에 인도한 방사선작업을 하지 않게된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록을 보관관리

다. 방사선관리수첩 발급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피폭방사선량을 기재할 개인별 방사선관리수첩 발급

라. 피폭방사선량 보고대행 승인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을 관독할 수 없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17조의 7규정에 의거 관독기관등에 피폭방사선량의 보고대행을 의뢰코자할 경우 "피폭방사선량 보고대행 승인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1) 보고대행 의뢰기관과 관독기관이 보고대행에 관한 협의서 작성시 보고대상자의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확인

(2) "피폭방사선량 보고대행 승인신청서" 및 "보고대행 협의서" 사본 첨부 제출

2. 피폭관리 비용

분기보고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법 제111조 제3항 및 방사선피폭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의거 매년 피폭관리비용을 납부.

가. 금액: 연 1인당 20,000원(부가가치세별도)

나. 납부방법: 협회가 발부하는 지로금액을 은행에 납부

3. 보고시 주의 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피폭관리업무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방사선사용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에 따른 기록관리업무

(과학기술처공고 제1992-31호, '92. 4. 24)

방사선사용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이 폐지된 기관은 원자력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의거 해당하는 기록을 협회에 인도하여야 합니다.